

(재연장 공모 관련)

**「2025년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

202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국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및 공공부문 도입 촉진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련 분야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 수여

□ 표창대상 및 심사방향

-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정책·기술개발 등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
- 클라우드의 일반 국민 등 민간 이용 확대 및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한 자
 - 신기술 개발 등 클라우드 미래 선도·산업 고도화 및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촉진에 기여한 자
- 자체 표창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추진

II. 표창 후보자 추천

□ 표창개요

- 추가 공모부문 및 규모

상훈	부문		규모	총계
장관표창	디지털서비스 진흥 (공공 분야)	개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점	2점
		단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점	

* 표창후보자 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표창 규모는 조정 가능

○ 표창 대상

부분	신청 대상
개인 표창	개인의 공적에 의한 표창
단체 표창	기관, 단체,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표창

○ 표창 시기 : 2025 데이터·클라우드 진흥주간(12월 3주차)

※ 표창 수여일 및 시상 행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추천대상

-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 공공 및 민간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도입·확산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
-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등 클라우드 미래선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및 클라우드 인력 양성 기여 등 클라우드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 추천기준

- 일반기준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 자격기준(추천일 '25. 8. 19. 기준)
 - (개인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공무원인

경우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단체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추천 분야에 대해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근속표창 이후 해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표창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조회
- 다음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세부내용 [참고] 제한사유 조회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상자 심사 및 검증

- (1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사·선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기 서훈 여부, 사회적 평가 및 지위,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후 표창자 선정

III.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등

□ 제출서류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1)
- 공적조서 (개인 : 붙임2-1, 단체 : 붙임2-2)
 - ※ 추천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3)
 -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붙임4)
 -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 사본 (미래선도·산업고도화 부문에 한함, 별도서식)
 -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관은 기관장임
- 조사자 서명, 기관장 관인을 날인한 파일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5. 8. 19. 기준으로 작성하여 '○년 ○월'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행정사항

- 제출기간 : 2025. 11. 10.(월) ~ 11. 14.(금)까지 15시까지
 - ※ [참고] 1차 공모기간: 2025. 8. 19.(화) ~ 9. 26.(금)까지 15시까지
 - 2차 공모기간: 2025. 10. 30.(목) ~ 11. 7.(금)까지 15시까지
- 제출방법
 - (디지털서비스 진흥 부문) 전자문서로 제출
 - ※ 시스템을 통한 공문 직접 발송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발송 공문 및 붙임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미래선도·산업고도화 부문) 이메일로 제출
 -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제출처
 - (디지털서비스 진흥 부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이은진 주임
 - ※ 연락처 : lej@nia.or.kr (053-230-1783)
 - (미래선도·산업고도화 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팀 송현수 책임
 - ※ 연락처 : 123@nipa.kr (043-931-5781)
- 표창일(예정) : 2025년 12월 3주 예정
 - ※ 표창 수여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여장소 및 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 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추진일정(안)

- '25. 8. 19.(화) ~ 9. 26.(금) : 클라우드 유공자 추천·접수 (!차)
- '25. 10. 30.(목) ~ 11. 7.(금) : 클라우드 유공자 추천·접수 (연장)
- '25. 11. 10.(월) ~ 11.14.(금) : 클라우드 유공자 추천·접수 (재연장)
- '25. 11월 2주차 ~ 11월 3주차 : 서류검토,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25. 12월 3주 : 2025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 수여
 - ※ 표창 수여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공적분야”

연번	개인/ 단체*	소속	직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적개요	표창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주무관	800100		홍길동	20년 07월	총리("05.12) 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0	SK텔레콤	부장	-			성춘향				
3	23	(주)응답	-				단체	-	장관("05.06) 장관("03.07)		위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 대외직명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과기정통부 인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00부문 000 유공 (00부, 장관표창 등)
. . .	
공 적 내 용	
<p>※ 작성요령 (공공) 클라우드 적극 도입을 위한 노력, 혁신사례 창출, 활용체계 확립·확산 등을 통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민간) 클라우드 신기술 개발, 정책제안, 저술 활동 등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확산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p>	

공 적 내 용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p>※ 작성요령</p> <p>(공공) 클라우드서비스 적극 도입, 이용 모범사례 창출, 향후 확산 의지 등을 통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p> <p>(민간) 클라우드 신서비스 개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p>	

공 적 내 용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붙임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 (17)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 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참고 1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 공고 | 행사 | 입찰 | 인사 | 포상대상자공개 | 기타

전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총 게시물 : 11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12.29	2706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2.07	6392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10121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KFTC website navigation menu.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it, the '체불사업주명단공개' (Non-compliance with Business Owner Name Disclosure) menu item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The screenshot shows the '범위반사실조회' (Scope of Violation Search) pag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전체' (All). The search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search results table is empty, showing '데이터 없음' (No data).

번호	연도	피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and '이용안내'.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it, a grid of sub-menus is displayed. The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Defaulting Business Owner Name Disclosure)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visible sub-menus include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공표목록',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and '기타정보'.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 정책실명제 +
- 청렴정책공개 +
- 공공데이터개방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법령정보 +
- 국고보조사업 +
- 재정정보공개 +
- 자산운용 +
- 고용노동통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교역순

전체 10개씩

전체 지역-전체 업종-전체 [검색](#)

중

- 전체
- 성명
- 사업장명
- 사업장 주소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	----	------	----------	----------	--------

참고 2 부문별 심사기준

□ 디지털 서비스 진흥 부문 심사기준

○ 개인 표창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사업 실적	- 클라우드 관련 사업 추진 성과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실적	20
협력 및 참여도	- 클라우드 유관 기관들과의 상생 실적 -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단체 및 기업 활동 참여 실적 -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평가, 자문, 홍보 등 대외 활동 실적 - 클라우드 정책제안 및 애로사항 개선 활동 - 해외 확산 사례 및 단체·기관과의 교류 활동 - 클라우드 관련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실적	40
기여도	-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 고도화 등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 -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여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40
합 계		100

○ 단체 표창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파급성	-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 사례로서의 파급성 - 클라우드를 이용 및 도입한 서비스에 대한 향후 확산 의지	30
우수성	- 클라우드 사업 추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 도입의 적극성 - 클라우드 서비스 첨단 기술 적용의 우수성 - 비용절감 및 생산성 등 가시적인 향상 효과	30
기여도	-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 고도화 등 국가 경제 및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여도 - 클라우드 관련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실적 (평가, 자문, 사례 홍보 등 대외 활동을 통한 확산 실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40
합 계		100

□ 미래선도 · 산업고도화 부문 심사기준

○ 개인 표창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연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및 산업 특화 기술 개발 실적 - 클라우드 관련 논문·저술 활동 및 포럼 등 연구주제 발표실적 	20
협력 및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유관 기관들과의 상생 실적 -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단체 및 기업 활동 참여 실적 -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평가, 자문, 홍보 등 대외 활동 실적 - 클라우드 정책제안 및 애로사항 개선 활동 - 해외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활동 - 클라우드 관련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실적 	40
국가경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 고도화 등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 클라우드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등 클라우드 미래 선도 기여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40
합 계		100

○ 단체 표창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파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의 파급성 - 클라우드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경제적·사회적·산업적 파급성 	30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우수성 - 클라우드 관련 인증 및 특허 보유 현황 -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창출 	30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 클라우드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등 클라우드 산업 미래 선도 기여도 - 대국민 서비스 제공 	40
합 계		100